



수신 각회원

(경유)

제목 「소상공인 손실보전금」 시행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소벤처기업부 2022-353호(2022.5.30.) 관련입니다.
3.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·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「소상공인 손실보전금」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각회원님께서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지원 대상여부 확인은 「소상공인 손실보전금」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며, 비대상자로 조회될 경우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신청이 필요한 자이므로 아래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(1533-0100)으로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공통지원요건

-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
 - 매출규모: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(붙임자료 참조)
 - 개업일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1년 12월 15일 이전
 - 폐업일: '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
2.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

- 「소상공인 손실보전금」 홈페이지*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
 - 홈페이지 → '신청하기' → '약관동의' → '대상여부조회' 경로
 - * (홈페이지 접속방법)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'소상공인 손실보전금' 입력

3.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

[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]

(단위: 만원)

구분		연매출액* 4억원 이상		연매출액* 2 ~ 4억원		연매출액* 2억원 미만	
		상향지원	일반	상향지원	일반	상향지원	일반
개별 매출 감소율	△60% ^{이상}	1,000	800	800	700	700	600
	△40% ^{이상} -60% ^{미만}	800	700	800	700	700	600
	△40% ^{미만}	700	600	700	600	700	600

*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(붙임자료 참조)

4. 지원제외

- '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*을 지원받은 경우
- * '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

5. 신청 문의

- 전화 문의: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☎1533-0100(평일 09~18시 운영)
- 온라인 문의: 누리집(www.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

- 붙임 : 1. 중소기업부 2022-353호 공고 1부.
 2. 중기부 보도참고자료-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.8조원 확정 1부.
 3. 중기부 보도참고자료-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1부. 끝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 이 사 장 전 재



시행 경기도화협 제395호('22.6.2.)

민원 핫-라인 (031)245-5220

우 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) 4층 / www.kgta.or.kr.

전화번호 (031)243-5221, 2. 팩스번호 (031)251-9770 kgta5221@naver.com